**수학과 졸업논문 심사에 관한 내규**

제 1조(목적)

-이 내규는 수학과 졸업논문을 대체한 졸업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응시원서 제출시기)

-매 학기 시작 8주 이내로 정하며 학기 중 마감일시를 정한다.

제 3조(응시대상자)

-졸업요구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이수중인 자로 한다.

제 4조(시험과목)

-응시대상자의 시험과목은 9개 과목 :해석학1, 미분방정식, 정수론, 이산수학, 수리통계학, 현대대수1, 미분기하1, 다변수해석학, 위상수학1 중에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1. 수학과 학술제에 연구논문을 발표한 자 (지도 교수님당 한팀, 2인 이하 발표) : 1과목
2. 전공개설과목 전체를 이수하고 전공평점이 3.8점 이상인 자(단, 전공개설과목이란 연계전공과목을 제외한 75학점을 의미함) : 1과목
3. 전공개설과목 전체를 이수한 자 : 3과목
4. 조기 취업자 중 4대보험에 가입한 취업자 : 면제 (제출서류 : 4대보험가입증명서, 재직증명서)
5. 대학생 수학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자 : 면제
6. 학과에서 인정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이수한 자 : 하단 자격증 중 2개 이상 취득 시 면제, 1개 취득 시 3과목 면제
   * 1. 국가공인 빅데이터 분석기사 (ADP/ADsP)
     2. 사회조사분석사
     3. AICE(인공지능 능력시험)- 초급/중급/고급
     4. SQL 전문가/개발자
     5. 데이터 아키텍처 전문가/준전문가
7. 위 가~바 중 해당사항이 없는 자 : 5과목

제 5조(합격)

-응시과목 각각의 성적이 70점 이상으로 한다.

제 6조(재시험)

-응시과목에 불합격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볼 수 있다.

제 7조(출제위원)

-과목별 출제위원은 응시자에게 응시과목을 강의한 교수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불가피한 경우 학과장이 출제위원을 의뢰한다.

제 8조(예외규정)

-2012년 이전 신입생 및 편입생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1. 본인이 이수한 전공필수과목을 반드시 선택하고 나머지 과목은 별도로 정한다.
2. 2013년 이전 입학생은 과거 내규와 현 내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.
3. 제1조 - 제8조 나항의 내규 외의 사항은 수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.

부 칙

본 내규는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**금융공학전공 졸업논문 심사에 관한 내규**

제 1조(목적)

-이 내규는 수학과 금융공학 전공의 졸업논문 심사에 관한 논문지도, 논문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졸업논문 작성계획서 제출)

-금융공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지도교수와 상의해서 졸업논문계획서를 제출한다.

제 3조(졸업논문 제출시기)

-4학년 2학기 졸업시험이 끝나는 날까지 논문으로 작성하여 지도교수께 제출한다.

제 4조(논문지도교수의 위촉)

-‘수학과’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여 논문지도를 받는다. - 단, 지도교수는 담당하는 학생의 인원 제한은 없다.

제 5조(논문지도)

-논문지도는 매 주 금융공학수업 시간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.

제 6조(논문심사 위원)

-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와 관련 분야 교수 2인을 포함 3인으로 하며, 심사위원의 선정은 수학과전체 교수의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.

-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2인 교수님 가운데 선정한다.

제 7조(논문심사)

-논문심사는 각 심사위원 별로 따로 심사를 하여 점수를 부여하여 평균을 내며, 3인 심사위원의 회의를 거쳐 논문의 통과여부를 결정한다.

-금융공학은 주제가 다양하므로 점수를 부여할 때 상황을 고려하며 점수를 부여한다.